■ 민족문화연구 제86호(2020.02.2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197-230.
http://doi.org/10.17948/kcs.2020..86.197

조선 후기 『忠勳府謄錄』의 자료적 검토*

고민정(高旻廷)**

목 차

1. 머리말
2. 구성방식과 체제
3. 내용에 따른 분류
4.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공신을 우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충훈부에서 편찬한 『충훈부등록』의 구성 및 체제, 주요 내용 등을 고찰하여 향후 공신 관련 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충훈부등록』은 충훈부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내부에서 주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 기록으로 유일본 자료이다. 조선 초기 충훈부가 설립된 이래로 조선 말기 기공국으로의 개편이 있기 전까지 계속해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1609년(광해 9)부터 1890년(고종 27)까지 229년간의 기록이 남아있으며 전체 분량은 39책 6,568면이다.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B5A02029084).
**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연구교수.

이 책의 구성은 대체로 연월일의 순서에 따라 편차되었으나 충익부의 개편과 관련된 내용, 충익위의 모속 및 분간에 관한 내용, 적몰 재산의 처리에 관한 내용 등과 같이 특별한 사안이 생겼을 때에는 각 주제별로 하나의 책을 편차하기도 하였다. 즉『충훈부등록』은 원칙적으로 연월일을 기준으로 편차되었지만, 부분적으로는 특정 주제 또는 사건별로 모아 편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방대하여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충훈부의 역할 및 기능과 관련시켜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는 공신과 공신 자손의 자격 유지 및 변동에 관한 것, 둘째는 공신과 공신자손의 우대에 관한 것, 셋째는 왕실 의례에 관련된 것, 넷째는 충훈부의 운영에 관한 것 등이다. 이는 여타의 관찬 자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해당 내용을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공신 관련 연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충훈부등록, 충훈부, 공신, 공신자손, 특전.

1. 머리말

조선시대 功臣은 정치・외교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적을 세워 국가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획득한 집단을 말한다.[1] 개국, 반란, 역모, 반정 등의 정치적 사건과 종계변무, 대외적 전쟁 등의 외교적 사건을 겪은 후에, 국왕이 특별한 명령을 내려 큰 공적을 세운 신하에게 공신의 칭호를 하사하고 특전을 부여하였다. 이 때문에 공신의 녹훈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마다 행해진 일시적인 이벤트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공신에게 부여되었던 특전은 공신의 자손에게 대물림되었으므로 영속적인 측면을 갖게 된다.

조선시대 전시기를 통틀어 공신의 녹훈은 모두 28번이 행해졌는데, 17세기 이후로는 16번이 있었다. 광해군대에는 임진왜란 때의 호종, 임해군의 역모, 유영경 일파 제거, 김직재 옥사로 인해 4번의 녹훈이 있었다. 인조대에는 인조반정과 이괄의 난, 이인거의 역모, 이효립의 역모, 심기원의 역모로

1) 조선시대 공신은 일반적으로 配享功臣과 勳封功臣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배향공신과 훈봉공신은 그 성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훈봉공신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인해 5번의 녹훈이 있었다. 숙종대에는 복선군과 허견의 역모, 경종대에는 노론과 소론의 당쟁, 영조대에는 이인좌의 난으로 인해 각각 1번씩의 녹훈이 있었다.[2] 따라서 조선후기 공신의 녹훈은 광해군 및 인조대에 집중되었고 숙종, 경종을 거쳐 영조대까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공신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정치사 및 사회사, 서지학 및 고문서학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정치사 및 사회사 관점에서의 연구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80년대의 연구에서, 오갑균은 당쟁의 관점에서 분무공신의 책정과 대우에 대해 논의한 후 원종공신의 직역을 토대로 신분의 변동과 상승을 밝혔다.[3] 1990년대의 연구에서, 최승희는 원종공신녹권을 주요 자료로 활용하여 中人・良人・賤人 등이 원종공신으로 녹훈되면서 신분 상승을 이루었다고 보았다.[4]

2000년대의 연구에서, 이상식은 보사공신의 녹훈 과정을 숙종대 왕권의 안정화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보사공신의 신분과 가계, 사회적 관계망을 분석하였다.[5] 김학수는 향반 출신 박동형의 사례를 분석하여 분무공신으로 녹훈된 후 정치・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하였지만, 신분적 제약을 완전히 뛰어넘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6] 이처럼 정치사 및 사회사 연구는 정치사적 관심을 사회사적으로 확장하거나 정치・사회사적 내용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공신 녹훈의 정치적 배경과 과정, 공신의 직역 및 신분 변동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1980-90년대 연구에서는 공신의 녹훈이 조선 후기 신분제를 동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결론지었으나, 2000년대 이후 연구에서는 공신이 되더라도 문벌사회의 최상위 계층으로의 편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

2) 신명호,『조선의 공신』, 가람기획, 2003; 장서각 편,『조선의 공신』,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3) 오갑균,「奮武功臣에 대한 分析的 硏究」,『淸州敎育大學 論文集』제21집, 청주교육대, 1984; 오갑균,「奮武功臣으로 인한 身分變動」,『邊太燮博士 華甲紀念 史學論叢』, 삼영사, 1985.

4) 최승희,「朝鮮後期 原從功臣錄勳과 身分制 동요」,『韓國文化』제22호,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8

5) 이상식,「숙종대 保社功臣의 錄勳 과정과 사회적 關係網 분석」『한국사연구』제155호, 한국사연구회, 2011.

6) 김학수,「18세기 한 鄕班 출신 功臣의 정치・사회적 존재 양상—영조대 奮武功臣 朴東亨(1695-1739)을 중심으로—」,『朝鮮時代史學報』제77호, 조선시대사학회, 2016.

둘째 서지학 및 고문서학 관점에서의 연구는 대체로 2000년대에 이르러 이루어졌다. 전경목은 인조와 숙종대에 제작된 「二十功臣會盟軸」 2본의 자료적 특징과 문화재적 가치를 설명하였다.[7] 진나영은 保社 및 寧國 원종공신녹권의 頒賜과정, 형태 및 체제, 원종공신의 직역을 각각 분석하였다.[8] 그리고 김명화는 충훈부에서 공신자손을 관리하고 우대하기 위해 발급했던 여러 종류의 고문서를 대상으로 문서형식, 내용구성, 발급절차 등을 분석하였다.[9] 이처럼 서지학 및 고문서학 연구는 공신 관련 고문헌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서지사항 및 문서 행정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런데 최근 연구성과에서도 충훈부가 편찬한 『忠勳府謄錄』은 공신자손 관련 자료로 소개되거나 부분적으로 이용되었을 뿐,[10] 주요 자료로 활용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충훈부등록』은 충훈부가 공신 관련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편찬한 유일본 자료로, 17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약 3세기간의 기록이 남아 있다. 따라서 이 책은 현존하는 공신 관련 자료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공신에 관한 국가정책의 방향, 공신 지위의 세습과정, 공신회맹제 및 회맹연 등의 행사 개최, 공신과 공신자손에 관한 우대 사항, 충훈부의 운영 방식 등을 두루 살펴보기에 적합한 자료이다.[11]

이처럼 『충훈부등록』이 조선후기 공신을 연구하기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임은 틀림없으나, 지금까지 이를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아마도 자료가 가진 특성 때문이라 생각된다. 『충훈부등록』의 방대한 분량은 풍부하고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이점이 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대략의 내용을 훑어보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정리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행・초서체로 기록된 부분이 많고 고문서를

7) 전경목・박용만, 「〈二十功臣會盟軸〉의 특징과 가치」, 『장서각』 제22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8) 진나영・송일기, 「『保社原從功臣改修錄券』의 書誌的 硏究」, 『서지학연구』 제60집, 한국서지학회, 2014; 진나영, 「『寧國原從功臣錄券』의 書誌的 硏究」, 『서지학연구』 제73집, 한국서지학회, 2018.
9) 김명화, 「朝鮮後期 忠勳府 文書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9.
10) 같은 글, 42-43면, 58-66면.
11) 『忠勳府謄錄』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자료인데, 1991년 보경문화사에서 總目을 포함한 영인본 11책을 출간한 바 있다.

그대로 등서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독해하는 데에 익숙한 연구자가 아니라면 더욱더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충훈부등록』을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특성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를 선행하여 전체적인 구성과 주요 내용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충훈부등록』의 자료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공신 연구의 기초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며,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첫째는『충훈부등록』의 구성 및 체제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전체 규모, 수록 시기, 구성방식을 차례대로 고찰할 것이다. 둘째는『충훈부등록』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충훈부의 역할 및 기능과 관련지어 공신과 공신 자손의 자격에 관한 내용, 공신과 공신 자손 우대에 관한 내용, 왕실 의례에 관한 내용, 충훈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분류하여 살펴볼 것이다.

2. 구성방식과 체제

1) 편찬 규모와 현황 파악

『충훈부등록』은 현재 39책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 책의 소장처인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해제를 보면,『충훈부등록』은 본래 41책으로 구성되었으나 4책과 5책이 전해지지 않아 39책만 남았다고 설명하였다.[12] 또한 선행 연구에서도 이를 따라서 두 책의 결본으로 인해 1618년(광해 10)부터 1636년(인조 14)의 내용과 1722년(경종 2) 6월부터 1729년(영조 5) 6월까지의 내용이 전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였다.[13] 그러므로 위의 견해를 따른다면『충훈부등록』은 총 41책으로 편찬되었으나 이 중에서 2책이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하게 된 이유와 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한다.

---

12)「충훈부등록 해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home/index.do?idx=06&siteCd=KYU&topMenuId=206&targetId=379(2019.12.30 검색).
13) 김명화, 앞의 글, 42-43면.

첫째『충훈부등록』의 편찬 시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등록의 작성 주체가 되는 충훈부는 국초에 개국공신도감으로 설립되었다가 1434년(세종 16) 충훈사로 바뀌었으며 정난공신을 녹훈한 직후인 1454년(단종 2) 정1품아문으로 승격되어 공신에 관한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예우관서로 정립되었다.[14] 충훈부가 설립된 후로 등록을 편찬하였다는 직접적인 기록을 찾을 수 없었으나 1458년(세조 4) 정사공신 이저의 아들과 개국·정사공신 장사길의 손자가 천첩자가 아니라 양첩자이므로 충훈부 소장 등록을 아울러 改書했다는 기록을 볼 때[15] 이 이전부터 등록을 편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594년(선조 27) 임진왜란을 겪는 와중에 충훈부 문적이 산실되었기 때문에 남은 문적을 모아 등록 2책을 다시 편찬하였다고 하였으므로[16] 이 시기 전후로도 등록이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충훈부가 설립된 이후로 계속해서 등록이 편찬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현존하는 마지막『충훈부등록』에는 1890년(고종 27)까지의 기사가 기록되었으나, 책의 말미에는 1891년(고종 28)의 내용을 기록하였다가 지운 흔적이 있다. 이는 1890년(고종 27) 12월의 기사에 이어서 1891년(고종 28) 정월의 기사를 순서대로 기록하였다가 지운 것인데, 아마도 책을 바꾸어 1891년(고종 28) 정월 기사부터 새로 기록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더욱이 충훈부는 1894년(고종 31) 근대적인 제도로의 개편이 이루어지는 갑오개혁이 실시되어 記功局으로 개편될 때까지 그대로 존속했으므로[17] 그 업무에 관한 기록도 개편 전까지 계속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충훈부등록』의 편찬이 시작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은 현재 남아있는『충훈부등록』의 시기보다 앞뒤로 더 넓게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충훈부등록』에 수록된 시기를 대상으로 1609년(광해 1)부터 1890년(고종 27)까지만 등록이 편찬되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그 가운데에 누락된 시기를 결본으로 상정하여 설명하는 방식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

14) 고민정,「조선전기 충훈부의 성립과 역할」,『진단학보』제133호, 진단학회, 2019, 83-86면.
15)『세조실록』11권 세조 4년(1458) 윤2월 11일 기사.
16)『선조실록』56권 선조 27년(1594) 10월 15일 기미.
17)「軍國機務處進議案各條」,『日省錄』고종 31년(1894) 7월 11일.

둘째 현존하는『충훈부등록』을 토대로 冊·卷의 편차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남은 등록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책의 표제는 '忠勳府謄錄'으로 되어 있으며 표지의 우측 상단에는 '己酉, 庚戌, 辛亥'의 간지를 순서대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첫 장의 첫 부분을 보면 卷首題 없이 곧바로 본문이 시작되는데, 본문을 기록한 다음에 오른쪽 欄外에 '己酉年'이라 추기하였다. 두 번째에 해당하는 책의 표제도 '忠勳府謄錄'으로 되어 있으며 이 역시도 표지의 우측 상단에 '己酉, 庚戌, 辛亥'의 간지를 순서대로 기록하였다.[18] 그리고 첫 장의 첫 부분을 보면 '忠勳府壬子年謄錄'이라 한 후 본문을 시작하였다. 이 밖의 나머지 책도 모두 책의 표제는 '忠勳府謄錄'이라 하였고 그 책의 수록 시기에 해당하는 간지를 표지의 우측 상단에 기록하였다. 또한 첫 장의 시작 부분은 '干支+月+日' 또는 '年號+年+月+日 등으로 연월일을 기록한 후 해당 내용을 기록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따라서『충훈부등록』에는 책수와 권수가 전혀 기록되지 않았으며 연월일의 구분에 의거하여 본문을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표 1]은『충훈부등록』1책 및 39책의 표지와 본문에 해당하는 이미지이다.

[표 1]『충훈부등록』1책 및 39책의 표지와 본문

39책 본문	39책 표지	1책 본문	1책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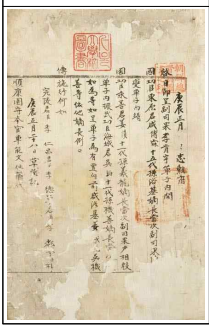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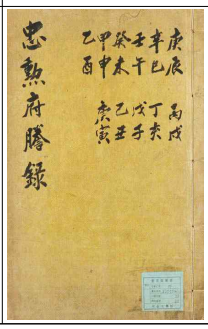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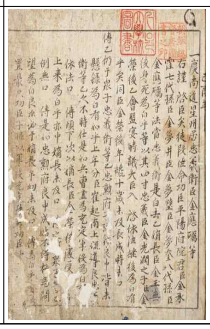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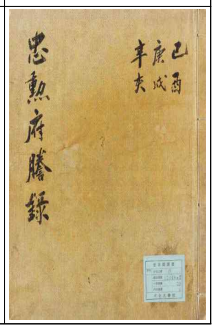

18) 2책의 표지에 기록된 '己酉, 庚戌, 辛亥'는 2책의 수록 시기인 '壬子, 癸丑, 甲寅'과 일치하지 않으며 오히려 1책의 수록 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2책의 표지에 기록된 간지는 1책의 수록 시기를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충훈부등록』의 편차 방식은 등록이라고 불리는 기록물의 일반적인 편찬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19] 일반적으로 등록은 중앙의 상설 관서에서 기록 보존을 목적으로 행정과정에서 산출된 1차 기록물을 각 관서의 소용에 맞게 재편집한 2차 기록물로 정의된다. 그리고 연월일을 기준으로 원본 문서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그 형식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또는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방식으로 편집되었다.[20] 따라서 등록은 처음부터 완결된 구조를 가지고 편찬된 기록물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이르러 그때그때의 정리를 위해 편찬되었던 기록물이기 때문에 동일한 책이라고 하더라도 편찬 시기와 편찬자에 따라 구성방식의 편차가 생겨나기도 한다. 이 때문에 현존하는 등록의 존재만으로 전체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충훈부등록』의 경우에도 편찬할 때의 원래 질서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한, 현존 책수를 토대로 해당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충훈부등록』의 전체 분량은 6,578면에 이르지만 각 책의 분량을 살펴보면 상당한 편차가 존재한다. 가장 얇은 책의 경우 76면, 가장 두꺼운 책의 경우 380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 4배의 차이가 있다. 또한 100면 이하가 4책, 101면부터 200면 이하가 25책, 201면부터 300면까지가 9책, 301면 이상에 해당하는 것이 1책이다. 따라서 이들은 대다수 200면 이상 300면 이하로 편찬되었으며 평균적으로는 168면이 된다.

『충훈부등록』에서 다루는 전체 시기는 1609년(광해 1)부터 1890년(고종 27)까지인데 각 책에 수록된 시기는 가장 짧은 책이 3년이고 가장 긴 책이 22년이므로 약 7배의 차이가 있다. 이 역시 5년 단위로 수록 시기를 구분하면 1년부터 5년까지가 17책, 6년부터 10년까지 14책, 11년부터 15년까지가 4책, 16년부터 20년까지가 1책, 21년부터 25년까지가 2책, 31년부터

19) 등록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연갑수, 「朝鮮後期 謄錄에 대한 연구」, 『역사문화연구』 제12집,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2000; 김혁, 「朝鮮後期 中央官廳 記錄物에서 謄錄의 위상」, 『서지학보』 제26호, 한국서지학회, 2002; 조영준, 「조선후기 宮房의 謄錄 작성과 고문서의 謄書 실태」, 『고문서연구』 제44집, 한국고문서학회, 2014; 고민정, 「『繼後謄錄』의 기술방식과 法外繼後에 대한 재검토」, 『사학연구』 제113호, 한국사학회, 2014.

20) 김혁, 앞의 글, 98-99면.

35년까지에 해당하는 것이 1책이 있었다. 따라서 10년 이하를 수록한 책이 대다수이며 평균적으로는 7년이 된다.

다음 [표 2]는『충훈부등록』의 전체 규모와 분량을 정리한 것이다.

[표 2]『충훈부등록』의 전체 규모와 분량

책수	대상	수록 연도	기간	분량
1	충훈부	1609-1611년(광해 1-3)	3년간	114면
2		1611-1614년(광해 3-6)	4년간	162면
3		1615-1617년(광해 7-9)	3년간	90면
4		1630년(인조 8), 1636-1652년(인조 14-효종 3)	18년간	250면
5		1669-1682년(현종 10-숙종 8), 1686-1689년(숙종 12-15), 1692년(숙종 18), 1694년(숙종 20), 1708년(숙종 34)	21년간	380면
6	충익부	1678년(숙종 4), 1680-1681년(숙종 6-7), 1689-1699년(숙종 15-25), 1701-1704년(숙종 27-30), 1708년(숙종 34), 1710-1711년(숙종 36-37), 1716년(숙종 42)	22년간	120면
7	충훈부	1677-1678년(숙종 3-4), 1681-1682년(숙종 7-8), 1685-1686년(숙종 11-12), 1691-1692년(숙종 17-18), 1694-1701년(숙종 20-27), 1705-1717년(숙종 31-43), 1719-1720년(숙종 45-46)	31년간	192면
8	충훈부·충익부	1686년(숙종 12), 1699년(숙종 25), 1703-1704년(숙종 29-30), 1710-1711년(숙종 36-37), 1715-1722년(숙종 41-경종 2)	14년간	240면
9		1729-1731년(영조 5-7) / 1681년(숙종 7)	4년간	220면
10	충익부	1730년(영조 6), 1732년(영조 8), 1739-1744년(영조 15-20)	8년간	84면
11	충훈부·충익부	1733-1734년(영조 9-10) / 1732년(영조 8)	3년간	144면
12	충훈부	1734년(영조 10), 1739-1745년(영조 15-21), 1748-1753년(영조 24-29)	14년간	278면
13	충훈부·충익부	1735-1737년(영조 11-13)	3년간	142면
14		1737-1740년(영조 13-16)	4년간	102면
15		1732-1743년(영조 8-19) / 1683년(숙종 9)	13년간	122면
16		1744~1746년(영조 20-22)	4년간	146면
17		1745-1748년(영조 21-24) / 1737년(영조 13)	5년간	138면
18		1747-1750년(영조 23-26)	4년간	224면
19		1749-1754년(영조 25-30)	6년간	214면
20		1760-1762년(영조 36-38)	3년간	162면
21		1763-1765년(영조 39-41)	3년간	148면
22		1766-1773년(영조 42-49) / 1755년(영조 31)	9년간	138면
23		1774-1780년(영조 50-정조 4)	7년간	172면
24		1780-1787년(정조 4-11)	8년간	164면

25		1792-1800년(정조 16-24)	9년간	220면
26		1800-1808년(정조 24-순조 8)	9년간	154면
27		1808-1815년(순조 8-15)	8년간	128면
28		1816-1824년(순조 16-24)	9년간	114면
29		1825-1828년(순조 25-28)	4년간	76면
30		1834-1839년(순조 34-헌종 5)	6년간	124면
31		1839-1842년(헌종 5-8) / 1838년(헌종 4)	5년간	100면
32		1843-1846년(헌종 9-12)	4년간	138면
33		1846-1851년(헌종 12-철종 2)	6년간	190면
34		1852-1855년(철종 3-6)	4년간	160면
35		1855-1862년(철종 6-13)	8년간	170면
36		1863-1867년(철종 14-고종 4)	5년간	180면
37		1867-1873년(고종 4-10)	7년간	202면
38		1873-1880년(고종 10-17)	8년간	198면
39		1880-1890년(고종 17-27)	11년간	268면
총 39책 6,568면, 1609-1890년간의 기록				

※ /은 추록 연도를 표시한 것임.

요컨대 충훈부가 성립된 후로 등록의 편찬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전란으로 인해 소실된 것도 있고 전래 및 보관상의 이유로 인해 완질이 전해지지 않는다. 또한 현존 등록에는 책수와 권수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서지사항만으로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일단 현존하는 자료의 형태와 수량에 따라 1609년(광해 1)부터 1890년(고종 27)까지를 기록한 총 39책 6,568면이 남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2) 편찬 시기의 특징

앞서 언급한 대로 『충훈부등록』에는 1609년(광해 1)부터 1890년(고종 27)까지의 내용이 수록되었다. 그러나 군데군데 몇 년치의 기사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기사가 모두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도 검토되어, ①1618(광해 10)부터 1636년(인조 14)까지의 19년간, ②1722년(경종 2)부터 1729년(영조 5)까지의 8년간, ③1653년(효종 4)부터 1668년(현종 9)까지의 16년간의 기사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하였다.[21]

21) 김명화, 앞의 글, 42-43면.

즉 총 3군데의 43년치에 해당하는 기사가 빠져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연도의 기사가 누락되었다. 그 기간은 ① 1618년(광해 10)부터 1629년(인조 7)까지의 12년간, ②1631년(인조 9)부터 1635년(인조 13)까지의 5년간, ③1653년(효종 4)부터 1668년(현종 9)까지의 16년간, ④1684년(숙종 10)의 1년간, ⑤1723년(경종 3)부터 1728년(영조 4)까지의 6년간, ⑥1756년(영조 32)부터 1759년(영조 35)까지의 4년간, ⑦1788년(정조 12)부터 1791년(정조 15)까지의 4년간, ⑧1829년(순조 29)부터 1833년(순조 33)까지의 5년간이다.

이를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17세기에는 전반과 후반에 각각 17년치의 기사가 누락되어 모두 34년치의 내용이 빠져 있다. 18세기에는 전반에 6년치, 후반에 8년치가 누락되어 모두 14년치의 내용이 빠져 있다. 19세기에는 전반에만 5년치의 기사가 누락되었다. 따라서『충훈부등록』은 1609년(광해 1)부터 1890년(고종 27)에 해당하는 282년간의 기록 중에서 53년간의 내용을 제외한 229년간의 내용이 수록되었고, 19세기, 18세기, 17세기의 순서로 비교적 자료가 온전하게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표 3]은『충훈부등록』에 기록되지 않은 기간을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3]『충훈부등록』에 기록되지 않은 기간

번호	구분	해당 연도	기간
1	17세기 전반	1618-1629년(광해 10-인조 7), 1631-1635년(인조 9-13)	17년간
2	17세기 후반	1653-1668년(효종 4-현종 9), 1684년(숙종 10)	17년간
3	18세기 전반	1723-1728년(경종 3-영조 4)	6년간
4	18세기 후반	1756-1759년(영조 32-35), 1788-1791년(정조 12-15)	8년간
5	19세기 전반	1829-1833년(순조 29-33)	5년간
17세기 전반부터 19세기 전반까지 도합 53년간의 기록 누락			

『충훈부등록』에 수록된 229년간의 기록을 왕대별로 나누어 보면 수록 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난다. 첫째는 재위 기간이 모두 수록된

형태로 헌종, 철종, 고종의 경우가 이에 속한다. 등록에는 헌종이 재위하였던 1835년(헌종 1)부터 1849년(헌종 15)까지 15년간의 내용이 모두 수록되었으며, 철종이 재위하였던 1850년(철종 1)부터 1863년(철종 14)까지 14년간의 내용도 모두 수록되었다. 고종의 경우에도 1864년(고종 1)부터 1890년(고종 27)까지 27년간의 내용이 빠짐없이 수록되었다.

둘째는 재위 기간의 일부가 수록된 형태로 재위 기간의 앞부분 또는 뒷부분이 수록된 경우와 일정한 규칙 없이 재위 기간의 일부가 수록된 경우로 세분할 수 있다. 앞부분이 수록된 형태는 광해군, 효종, 경종이 이에 해당된다. 광해군은 1609년(광해 1)부터 1622년(광해 14)까지 14년간 재위하였는데 이 중에서 1609년(광해 1)부터 1617년(광해 9)까지 9년간의 내용이 수록되었다. 효종은 1623년(효종 1)부터 1659년(효종 10)까지 10년간 재위하였는데 이 중에서 1623년(효종 1)부터 1625년(효종 3)까지 3년간의 내용만 수록되었다. 경종은 1721년(경종 1)부터 1724년(경종 4)까지 4년간 재위하였으나 이 중에서 1721년(경종 1)부터 1722년(경종 2)까지 2년간의 내용만 수록되었다. 또한 뒷부분이 수록된 형태는 현종이 이에 해당된다. 현종은 1660년(현종 1)부터 1674년(현종 15)까지 15년간 재위하였으나 1669년(현종 10)부터 1674년(현종 15)까지 6년간의 내용만 수록되었다.

일정한 규칙 없이 재위 기간의 일부가 수록된 경우는 인조, 숙종, 영조, 정조, 순조가 이에 해당된다. 인조는 1623년(인조 1)부터 1649년(인조 27)까지 27년간 재위하였는데 이 중에서 ①1630년(인조 8)과 ②1636년(인조 14)부터 1649년(인조 27)까지의 15년간이 수록되었다. 숙종은 1675년(숙종 1)부터 1720년(숙종 46)까지 46년간 재위하였으나 ①1675년(숙종 1)부터 1683년(숙종 9)까지, ②1685년(숙종 11)부터 1720년(숙종 46)까지 45년간이 수록되었다.

영조는 1725년(영조 1)부터 1776년(영조 52)까지 52년간 재위하였으나 ①1729년(영조 5)부터 1755년(영조 31)까지, ②1760년(영조 36)부터 1776년(영조 52)까지 44년간이 수록되었다. 정조는 1777년(정조 1)부터 1800년(정조 34)까지 34년간 재위하였으나 ①1777년(정조 1)부터 1787년(정조

11)까지, ②1792년(정조 16)부터 정조 24년(1800)까지 20년간이 수록되었다. 마지막으로 순조는 1801년(순조 1)부터 1834년(순조 34)까지 34년간 재위하였으나 ①1801년(순조 1)부터 1828년(순조 28)까지, ②1834년(순조 34)까지 29년간이 수록되었다.

다음 [표 4]는 왕대별로 수록 기간을 정리한 것이다.

[표 4]『충훈부등록』의 왕대별 수록 기간

번호	왕대	재위 기간	수록 기간	재위 기간 대비 수록 기간의 비율
1	광해군	14년(1609-1622)	9년(광해 1-9)	64%
2	인조	27년(1623-1649)	15년(인조 8, 14-27)	55%
3	효종	10년(1650-1659)	3년(효종 1-3)	30%
4	현종	15년(1660-1674)	6년(현종 10-15)	40%
5	숙종	46년(1675-1720)	45년(숙종 1-9, 11-46)	98%
6	경종	4년(1721-1724)	2년(경종 1-2)	50%
7	영조	52년(1725-1776)	44년(영조 5-31, 36-52)	83%
8	정조	24년(1777-1800)	20년(정조 1-11, 16-24)	83%
9	순조	34년(1801-1834)	29년(순조 1-28, 34)	85%
10	헌종	15년(1835-1849)	15년(헌종 1-15)	100%
11	철종	14년(1850-1863)	14년(철종 1-14)	100%
12	고종	27년(1864-1890)[22]	27년(고종 1-27)	100%
총 282년 중 229년(81%)의 기록				

위와 같이『충훈부등록』에 수록된 시기를 왕대별로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 경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등록의 누락된 부분이 특정 왕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연결된다. 이를테면, 광해군의 재위 10년부터 그 다음 왕인 인조의 재위 7년까지의 기록이 함께 누락되었다. 그리고 효종의 재위 4년부터 현종의 재위 9년까지도 연속적으로 누락되었으며 경종의 재위 2년부터 영조의 재위 4년까지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둘째, 특정 왕의

22) 고종의 재위 기간은 대한제국 시기까지 포함하면 1907년(고종 43)까지이나『충훈부등록』의 수록 기간과의 비교를 위하여 1890년(고종 27)까지만 계산하였다.

경우는 재위 중간 부분의 기록이 누락되었다. 숙종은 재위 10년에 관한 기사만 빠져 있으며 영조는 재위 31년부터 35년까지 5년간의 기사가 누락되었다. 정조도 재위 12년부터 15년까지 3년간의 기사가 누락되었다. 셋째, 순조 34년 이후로 고종 27년까지는 모든 연도의 기록이 빠짐없이 기록되었다. 즉 19세기 전반 이후로 헌종, 철종, 고종대의 기록은 누락된 부분 없이 완벽하게 전해진다.

이처럼 특정 기간의 기록이 전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충훈부등록』의 전체 규모를 특정할 직접적인 단서와 편찬 당시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등록의 편찬 특성에 비추어볼 때 특정 시점에 한꺼번에 기록하면서 일부 기간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편찬된 등록의 일부가 현재까지 전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염두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충훈부등록』에는 기록되지 않은 일부 기간이 존재하며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설명하였으나, 이와 상대적으로 특정 연도가 여러 책 속에 중복되어 기록된 모습을 아울러 확인할 수 있다. 즉 동일한 연도의 내용이 하나의 책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러 책에 분산되어 수록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17세기 전반부터 19세기 후반까지 등록의 전체 범위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특정 연도의 내용이 적게는 2책, 많게는 4책에까지 나누어 수록되었다.

이를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17세기는 전반의 1년간, 후반의 15년간이 해당되므로 모두 16년간이 중복된다. 18세기는 전반의 30년간, 후반의 5년간이 해당되므로 모두 35년간이 중복된다. 19세기는 전반과 후반이 각각 4년간이 해당되므로 모두 8년간이 중복된다. 따라서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책 속에 중복되어 수록된 연수는 모두 59년간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시기적으로 크게 두 가지 경향을 보인다. 첫째, 17세기 전반과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후반까지의 기록에서 확인되는 모습으로, 책의 끝부분에 수록된 연도의 내용이 다음 책까지 연결되었기 때문에 중복으로 보이는 경우이다. 둘째, 17세기 전반과 18세기 전반에서의 기

록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각 책에 수록된 연도가 순서대로 연결되지 않고 일정 부분만 수록되면서 다른 책의 수록 연도가 중복되는 경우이다. 이는 등록의 편차가 반드시 연 단위와 일치하지 않으며 또 다른 기준을 토대로 구성되었음을 시사한다.

다음 [표 5]는 각 시기별 중복 기간 및 책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5]『충훈부등록』에 중복 기록된 기간

번호	구분	연도	책수
1	17세기 전반	1611년(광해 3)	1책, 2책
2	17세기 후반	1677년(숙종 3)	5책, 7책
		1678년(숙종 4), 1692년(숙종 18), 1694년(숙종 20)	5책, 6책, 7책
		1680년(숙종 6), 1689년(숙종 15)	5책, 6책
		1681년(숙종 7)	5책, 6책, 7책, 9책
		1682년(숙종 8)	5책, 7책
		1686년(숙종 12)	5책, 7책, 8책
		1691년(숙종 17), 1695-1698년(숙종 20-24)	6책, 7책
		1699년(숙종 25)	6책, 7책, 8책
3	18세기 전반	1701년(숙종 27)	6책, 7책
		1703-1704년(숙종 29-30)	6책, 8책
		1708년(숙종 34), 1710-1711년(숙종 36-37), 1716년(숙종 42)	5책, 6책, 7책
		1717년(숙종 43), 1719-1720년(숙종 45-46)	7책, 8책
		1730년(영조 6)	9책, 10책
		1732년(영조 8)	10책, 11책, 15책
		1733년(영조 9)	11책, 15책
		1734년(영조 10)	11책, 12책, 15책
		1735-1736년(영조 11-12)	13책, 15책
3	18세기 전반	1737년(영조 13)	13책, 14책, 15책, 17책
		1738년(영조 14)	14책, 15책
		1739-1740년(영조 15-16)	10책, 12책, 14책, 15책
		1741-1742년(영조 17-18)	10책, 12책, 15책
		1743년(영조 19)	10책, 12책, 15책, 16책
		1744년(영조 20)	10책, 12책, 16책
		1745년(영조 21)	12책, 16책, 17책
		1746년(영조 22)	16책, 17책
		1747년(영조 23)	17책, 18책
		1748년(영조 24)	12책, 17책, 18책
		1749-1750년(영조 25-26)	12책, 18책, 19책
4	18세기 후반	1751-1753년(영조 27-29)	12책, 19책

		1780년(정조 4)	23책, 24책
		1800년(정조 24)	25책, 26책
5	19세기 전반	1808년(순조 8)	26책, 27책
		1838-1839년(헌종 4-5)	30책, 31책
		1846년(숙종 12)	32책, 33책
6	19세기 후반	1855년(철종 6)	34책, 35책
		1867년(고종 4), 1873년(고종 10)	36책, 37책
		1880년(고종 17)	38책, 39책
1611-1880년간 중의 도합 59년간			

요컨대 『충훈부등록』은 1609년(광해 1)부터 1890년(고종 27)까지의 범위가 수록되었지만 군데군데 56년치의 기사가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226년간의 기사가 남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일부의 경우 특정 연도의 기사가 하나의 책에 수록된 것이 아니라 여러 책에 분산되어 수록되었는데 1611년(광해 3)부터 1880년(고종 17)까지 중에서 59년치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등록을 편차할 때에는 연도의 순서만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3) 구성상의 특징

앞서 『충훈부등록』에는 수록 시기가 겹치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다시 책별로 정리하면 6책, 10책, 12책, 15책이 다른 책들에 비해서 겹치는 부분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즉 6책은 5책, 10책은 9책 및 11-16책. 12책은 11책 및 12-19책, 15책은 11-14책과 수록 시기가 중복되었다. 그리고 이 책들을 대상으로 수록대상과 구성방식을 살펴보면 ①6책과 10책, ②12책, ③15책이 각기 다른 목적과 방식으로 편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①6책과 10책이 다른 책들과 수록 시기가 겹치는 이유는 이들이 충훈부가 아닌 충익부의 업무에 관한 사항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충익부는 조선 초기부터 원종공신을 위한 관서로 설립되어 이조의 속아문으로 편제되었으나[23]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끝없이 이어지면서 치폐를 거듭하

23) 『世祖實錄』 4권 세조 2년(1456) 6월 8일 병오; 『世祖實錄』 38권 세조 12년(1466) 1월 15일 무오.

게 되었다.[24] 광해군대에 이르러 복설되었으나[25] 이후로도 충훈부 또는 병조로의 합설에 관한 논의가 거듭되었다.[26] 이에 따라 충익부는 충훈부와 병조를 오가며 여러 차례 이속되었으며, 마침내 1707년(숙종 27)을 기점으로 충훈부로 합속되었다.[27] 이 때문에 충익부에 관한 기록이 『충훈부등록』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6책에는 1678년(숙종 4)부터 1716년(숙종 42)까지 충익부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이 수록되었다. 충익부를 충훈부로 합속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합속 전후의 원종공신의 세계단자 수합 및 자손록 성책 편찬 지침, 충익위 입번 자격 사항에 관한 논의, 연호잡역 부과에 관한 문제, 번포의 방납 문제와 관련된 啓, 啓目, 關文, 稟目, 節目 등이 포함되었다. 7책부터는 충익부가 충훈부에 합속된 후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충훈부와 충익부에 관한 기록이 별도의 구분 없이 해당 연월일에 기록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은 끝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10책은 표지에서 '翊府文簿別錄'이라고 밝힌 바와 같이 충익부에 관한 내용만 별도로 수록하였다. 1730년(영조 6)부터 1744년(영조 20)까지 충익부가 慶尙監營, 慶尙右兵營, 開寧縣監과 주고받은 관문 및 牒呈이 집중적으로 수록되었으며 병조, 비변사와 주고받은 관문 및 甘結 등도 함께 수록되었다. 이들이 모두 분무원종공신을 녹훈한 이후로 발생한 충익위의 冒屬 및 分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10책은 『충훈부등록』의 일반적인 구성방식과 달리 주제별 구성방식을 이용하여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12책도 충익부가 충훈부로 합속된 이후로 편찬된 것이지만 충훈부에 관한 내용만 정리되었다. 12책에는 1734년(영조 10)부터 1753년(영조 29)까지 충

24)『光海君日記』102권 광해 8년(1616) 4월 17일 병진.

25)『忠勳府謄錄』3. "一, 忠勳府啓目, 四月十八日承傳內, 忠翊府之設, 本爲原從功臣, 而但祖宗朝錄功稀闊, 以此中廢矣. (…) 今依國法, 復設忠翊府. (…) 萬曆四十四年[1616]四月二十四日."

26)『承政院日記』266책 숙종 4년(1678) 8월 28일;『承政院日記』266책 숙종 4년(1678) 9월 13일 신해;『承政院日記』276책 숙종 6년(1680) 5월 20일 무신;『承政院日記』334책 숙종 15년 3월 13일 경진.

27)『肅宗實錄』35권 숙종 27년(1701) 12월 27일 기묘;『承政院日記』617책 영조 2년(1726) 5월 18일 기유.

훈부가 무안현감, 나주목사, 전라도관찰사 등과 주고받은 관문, 나주와 함안의 田民이 올린 等狀과 품목, 충훈부가 국왕에게 올린 계목과 형조가 왕세자에게 올린 申目 등의 문서가 수록되었다. 이들은 충훈부가 역적 羅晩迪과 羅崇說 소유의 전라도 소재 전답을 1차로 적몰한 후 은닉재산을 재차 적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12책도 10책과 같이 주제별 편찬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③15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편찬되었다. 첫 부분은 14책에 이어서 1741년(영조 17)부터 1743년(영조 19)까지 연월일 순서에 따라 충훈부와 충익부의 업무 내용이 기록되었고, 뒷부분은 1732년(영조 8)으로 거슬러 올라가 다시 연월일 순서에 따라 1743년(영조 19)까지 순차적으로 기록하였다. 이것은 표지에서 '散秩合錄'이라 한 것과 같이 11책 및 13-14책에 수록하지 못한 내용을 뒤늦게 발견하여 정리·편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뒷부분은 내용상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없으나 뒷부분에는 충훈부가 救食禮, 洗杯宴 등과 같은 행사에 필요한 물품이나 기공각 수리에 필요한 물품의 進排를 지시하기 위해 소관 아문에게 보낸 甘結이 주로 실려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음 [표 6]은 『충훈부등록』의 10책과 15-17책의 표지이다.

[표 6] 『충훈부등록』 10책 및 15-17책의 표지

17책 표지	16책 표지	15책 표지	10책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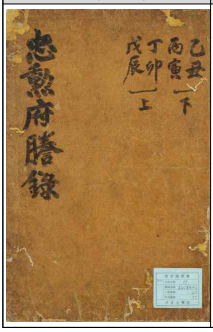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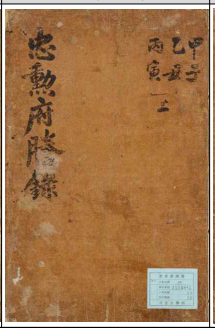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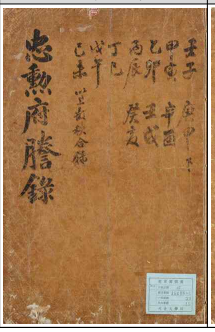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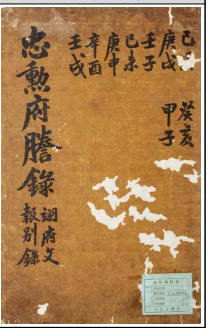

이외에도 18세기 이후 편찬된 『충훈부등록』에는 특정 내용을 追記하는 형태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9책은 1729년(영조 5)부터 1731(영조 7)년까지의

내용이 수록되었으나 그 중간에는 1681년(숙종 7)의 기사 1건이 수록되었다. 이것은『兵曹謄錄』에서 謄出한 것으로 10세 미만의 아이는 군역에서 제외한다는 조정의 논의를 담고 있다.[28] 즉 당시 군역에 관한 논의를 할 때 이전에 결정되었던 사실을 참고하기 위해 함께 기록하였던 것이다. 15책에도 1732년(영조 8)부터 1743년(영조 19)까지의 기록 외에 1683년(숙종 9) 숙종이 인조반정 1周甲 기념으로 貞明公主에게 食物을 제급한 사실이 덧붙여졌다.[29] 이것은 영조가 인조반정 2주갑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당시 공적을 세웠던 정사공신의 성명을 현판에 새겨 게시할 것을 명령했던 것을 미루어 볼 때 이전의 일을 참고하기 위해 기록한 것이다.

또한 16-19책은 책의 끝부분과 다음 책의 앞부분의 연도가 겹쳐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1년 단위가 아니라 2년 단위를 하나로 묶어서 기록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예를 들어 16책에는 표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을축년과 병인년'의 '上'을 기록하고 17책 '을축년과 병인년'의 '下'를 기록한 후 다시 '정묘년과 무진년'의 '上'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편차하였다. 따라서『충훈부등록』의 편차는 시기마다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18세기 이후의『충훈부등록』에는 충익부의 합속으로 인해 충훈부와 충익부의 업무에 관한 내용이 함께 기록되었다. 그리고 역적재산의 적몰, 충익위의 모속 및 분간 등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특정 주제 및 지역을 구분하여 별책을 구성하는 방식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 사안과 관련 있는 기록을 추기하였으며 2년 단위로 묶어서 편차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충훈부의 소관 범위가 달라짐에 따라『충훈부등록』의 수록대상이 넓어졌으며, 구성방식이 부분적으로 조금씩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

28)『忠勳府謄錄』9, 145면. "辛酉[1681]四月初六日. 兵曹謄錄謄出. (…) 上曰, 依上年定奪, 兒弱減役, 以十歲爲限事, 知委施行, 可也."

29)『忠勳府謄錄』15, 70-72면. "去癸亥[1683]三月二十日. (…) 金壽恒啓曰, (…) 貞明公主, 獨侍宮中, 其時之事, 何可忍言? 至仁祖反正後, 奉大妃復位, (…) 而今年則異於常時, 當此凶歲, 雖不可如前錫宴, 似當有別樣優異之典, 故敢達. 上曰, 大臣所陳, 其意誠好, 衣資食物, 從優題給, 可也."

3. 내용에 따른 분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훈부등록』은 방대한 분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한꺼번에 모두 살펴보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여기에서는 대략 4가지로 구분하여 핵심적인 것만 정리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공신과 공신 자손의 자격에 관한 내용, 두 번째는 공신과 공신 자손 우대에 관한 내용, 세 번째는 왕실 의례에 관한 내용, 네 번째는 충훈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표 7]은 『충훈부등록』의 주요 내용을 그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7] 『충훈부등록』의 내용 분류

번호	분류	세부 분류	주요 내용
1	공신과 공신 자손의 자격 관련	공신의 녹훈과 삭훈	회맹제 일정 및 절차 상고 회맹제 참석자 및 참석 여부 확인 공신 추록 논의 역모자의 삭훈 및 재산 적몰
		공신자손 관리	공신 적장의 가계계승 및 봉사분쟁 공신가문의 세계단자 수봉과 자손록 작성
2	공신과 공신 자손 우대 관련	공신 우대	封君 및 사후 實職 추증 陪從 인원 배치 無職者 給料 논의 친족 상장례 부의 藥材 지급 및 내의원 파견 禮葬 시행 절차 遷葬에 필요한 물품 제급 공신 사후 妻子에게 給祿
		공신자손 우대	충의위 입속 충의위 모속자 색출 및 처벌 승습봉군의 대상자 정리 충훈부 외 다른 관직으로의 추천 및 임명 잡역 면제
3	왕실 의례 관련	왕실의 묘소 관리	묘소수위관의 임명 및 교체
		왕실의 상장례	상장례 때 충의위 차출 상장례 절차에 관한 내용

4	충훈부의 조직운영 관련	조직구성의 변화	충훈부 구성원의 교체 및 충원, 휴가 충익부의 이속
		운영에 필요한 재원마련	충훈부 소유 재산의 관리 수세 방식에 관한 논의

1) 공신과 공신자손의 자격 관련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공신과 공신자손의 자격유지 및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공신의 녹훈 및 삭훈에 관한 것과 공신자손 관리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진다. 공신 녹훈 및 삭훈에 관한 것에는 회맹제의 일정 및 절차에 관한 상고, 회맹제 참석자 및 참석 여부의 확인, 공신의 추록 논의, 역모자의 삭훈 등이 포함된다. 공신자손 관리에 관한 것은 공신 적장의 가계계승 및 봉사분쟁, 공신가문의 세계단자 수봉 및 자손록 작성에 관한 것이다.

충훈부는 일상적인 공신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공신의 녹훈에 관한 업무는 이를 위해 특별히 설치된 녹훈도감에서 주관하였다. 따라서 충훈부는 공신의 녹훈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30] 하지만 공신의 녹훈과 관련된 각종 의례의 구체적인 절차와 일정을 정할 때 이전의 내용을 상고하는 일은 충훈부가 담당하였다. 이것은 충훈부가 舊功臣 관련 기록들을 소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회맹제에는 새로 녹훈된 공신뿐만 아니라 구공신 및 적장자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였다. 이에 공신과 공신자손을 모두 파악하고 있던 충훈부가 회맹제의 참석자를 간추렸으며 참석 여부까지 확인하여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따라서 회맹제의 절차에 대한 상고, 회맹제의 참석 인원 파악 및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이 기록되었다.

공신의 녹훈에 관해서는 공식적인 절차가 끝난 후에도 간혹 공신의 추록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는 자손들이 자신의 선조가 공적이 탁월한데도 공신의 반열에 들지 못했음을 문제 삼아 녹훈을 재차 청원했기 때문이다. 녹훈에 관한 사항은 본래 녹훈도감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이러한

30) 고민정, 앞의 글, 2019, 86-89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권설관서인 녹훈도감은 이미 임무가 끝나 폐설된 후인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결국 충훈부 소관이 되었다. 예를 들면, 1610년(광해 2) 前參奉 鄭承緖가 자신의 부친 金堤郡守 鄭湛이 임진왜란 때 왜적과 싸우다가 전사했으나 원종공신에도 들지 못했으므로 선무공신으로 추록하기를 上言하였다.[31] 이에 대해 충훈부는 상언의 내용을 요약하고 당시의 녹훈당상에게 상고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첨부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았다.[32] 이처럼 공신의 추록을 요청하는 청원, 이를 충훈부가 검토한 내용, 대신들과 논의한 내용, 국왕에게 재가받은 내용 등이 기록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대체로 임진왜란과 관련된 宣武・扈聖・淸難공신과 임해군 역모를 진압한 翼社공신과 관련된 것들이 많은 편이다.

한번 공신이 되었더라도 살인죄, 불충죄를 저질러 처벌받게 되면 삭훈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었다.[33] 역모죄로 삭훈되면 공신녹권, 회맹록, 공신교서에서 이름이 삭제되었고 공신화상도 모두 소각되었다. 이러한 절차는 조선시대 내내 常行之典으로 행해지고 있었다.[34] 예를 들면 인조대 정사공신 沈器遠과 沈器成이 역모죄로 처형된 후 충훈부는 국왕의 전교를 받아 공신녹권, 회맹록, 공신교서에서 '器遠'과 '器成'의 名字를 削去하였고 공신화상도 소각하였다.[35] 이처럼 충훈부는 공신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는데, 역모죄를 지은 자들을 삭훈하라는 국왕의 명령, 충훈부 및 민간에서 소장하고 있는 각종 공신 관련 자료에서 역적의 이름을 지우는 방안을 논의한 내용, 공신화상을 수집하여 소각하는 내용 등이 기록되었다.

공신에게 주어진 특전은 그의 직계자손에게 대물림되었으므로 충훈부에서

31)『忠勳府謄錄』1, 35면. "慶尙道寧海居, 前參奉臣鄭承緖. 右謹啓臣矣段, 臣矣父故金堤郡守臣鄭湛, 當壬辰方張之寇截熊峙衝要之路, 有忘身殉國之忠, 有力戰死事之功, (…) 臣矣父獨不與宣武原從之末, 是何褒忠之典, 能施於其後."

32)『忠勳府謄錄』1, 44-45면. "忠勳府啓目 (…) 設廳錄功堂上堂上具在爲白有置, 令其時次知錄勳堂上相考回啓何如? 啓依允. 萬曆三十八年[1610]五月二十一日."

33) 고민정, 앞의 글, 90면.

34)『忠勳府謄錄』9, 144면. "功臣錄券中, 逆賊名字削去, 自是國朝常行之典, (…) 圻名字君號, 一一墨抹削去之意."

35)『忠勳府謄錄』4, 58-59면. "啓曰, 逆魁器遠其弟器成, 幷削勳事, 捧承傳于本府矣. (…) 會盟錄敎書軸 (…) 取來幷削其姓名 (…) 逆魁器遠器成功臣畵像消却."

는 공신의 적장자손을 특별히 관리하였다. 이에 따라 각 가문에서 가계계승이 이루어질 때마다 충훈부에 상언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았다. 다만 계승자가 적장자이면 해당 내용의 요점만 모아서 기록하였으나 계후자, 이성수양자, 첩자이면 해당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각 가문에서 봉사분쟁이 있으면 충훈부의 힘을 빌어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도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더욱이 충훈부는 공신자손을 파악하기 위하여 世系單子를 收捧하고 子孫錄을 편찬하였다. 이에 관한 내용은 1611년(광해 3) 전란 이후 새로운 자손록의 成籍 지침, 비용 등 논의한 것을 시작으로[36] 1888년(고종 25)까지 대략 식년마다 해당 내용을 기록하였다.[37] 그리고 세계단자의 수봉을 위해 충훈부가 경외 주요 관서로 移文한 문서의 내용도 아울러 수록하였다.[38]

요컨대 공신은 한번 그 반열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를 다시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었고, 공신의 지위는 그 본인을 넘어서 자손에게까지 대물림되었다. 따라서 충훈부는 각 공신의 지위 변동, 공신가문의 인적 계승상황을 별도로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이 때문에 공신의 녹훈, 추록, 삭훈에 관한 내용과 공신가문의 가계계승, 세계단자 제출에 관한 내용이 주요하게 기록되었다.

2) 공신과 공신자손의 우대 관련

두 번째는 충훈부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공신과 공신자손의 우대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이것도 역시 그 대상에 따라 공신에 대한 우대와 공신자손에 대한 우대로 구분할 수 있다. 공신에 대한 우대는 공신의 封君 및 사후 實職 추증, 無職者에게 給料 지급, 친족 喪葬禮 부의, 약재 지급 및 내의원 파견, 禮葬의 시행, 공신 사후 妻子에게 給祿하는 것 등이 있다. 공신자손에 대한 우대는 충의위의 입속, 충의위 모속자의 색출 및 처벌, 承襲封君 대상의 확인 등이 있다.

---

36)『忠勳府謄錄』1, 72면. "忠勳府今己酉年[1611] (…) 及十五功臣子孫錄, 成籍式年."
37)『忠勳府謄錄』39, 173면. "正勳子孫等, 每當式年例, 爲收捧單子."
38) 김명화, 앞의 글, 59-62면.

공신이 봉군되기 위해서는 법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2품 이상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39] 자격의 충족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평난공신 南巖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實職이 아니라 納銀으로 종2품 嘉善이 된 경우, 老人職으로 종2품 嘉義에 오른 경우에 대해서는 자격의 충족 여부를 두고 臺諫과 충훈부가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으므로 여러 번의 논의를 거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향후 봉군의 자격을 따질 때 참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기록을 남겼다. 또한 공신 중에서도 실직에 임명된 적이 없이 봉군된 자는 사후에 실직을 추증해주는 규례가 마련되어 있었다.[40] 이에 충훈부는 대상자가 생길 때마다 국왕에게 추증의 시행을 재가받았고 이를 재차 이조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충훈부가 봉군된 자의 사후에 실직을 추증하기 위해 국왕의 재가를 받는 내용, 해당 사실을 충훈부가 이조에게 알리는 내용 등이 기록되었다.

공신은 관직에서 물러나도 급료를 받을 수 있는 규례가 일찍부터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의 여파로 시행되지 않다가 1638년(인조 16) 충훈부의 건의로 京中에 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다시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41] 이에 충훈부는 대상자가 생길 때마다 왕에게 보고하고 급료의 지급을 허가받았기 때문에 해당 기록이 남아있으며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을 논의한 기록 등도 남아있다. 또한 공신의 가까운 친족에 해당하는 부모, 처가 사망했을 때에는 국가에서 일정한 부의를 내려주었다. 이 때문에 충훈부가 국왕으로부터 각 공신의 父親喪, 母親喪, 妻喪이 생길 때마다 부의의 지급을 허가받는 기록이 남아있다.

더욱이 국왕은 공신에게 병환이 있으면 특별히 약재를 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17세기 충훈부에는 공신을 위한 약국이 별도로 설치되었다.[42] 따라

39)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 封君. "王妃父, 及二品以上宗親・功臣・功臣承襲等. 【承襲者父歿乃授 ○凡單言功臣原從不與焉.】及三品以下宗親竝用邑號. 儀賓同."

40) 『忠勳府謄錄』 3, 11면. "凡功臣無實職單封君而身死, 則每爲追贈實職是白乎等用良"

41) 『忠勳府謄錄』 4, 16-17면. "戊寅[1638]三月二十四日. 忠勳府啓曰, 親功臣罷産者, 自前有給料之例. (…) 兵難以後, 此規廢而不擧, (…) 罷散在外者, 雖不可編及, 其在京者, (…) 依前磨鍊付料."

42) 김성수, 「16・17세기 中央衣料機構의 運營實態」, 『서울학연구』 제20호,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2003, 75면.

서 충훈부가 공신의 병환을 알리는 내용, 국왕이 약재를 하사하는 내용, 충훈부가 호조로부터 약재를 받기 위해 주고받은 공문, 혜민서의 약재 부족으로 분배를 조절하는 내용 등이 기록되었다. 이외에도 국왕은 병환이 위독한 공신이 있으면 내의원을 별도로 파견하여 병세를 돌보게 하였는데, 이것이 확대됨에 따라 19세기를 전후로 공신을 전담하는 의원이 충훈부에 배치되었다.[43] 이에 따라 충훈부가 중병에 걸린 공신의 상태를 국왕에게 알리는 내용, 국왕이 내의원의 파견을 지시하는 내용, 충훈부 소속 의원을 교체한다는 내용 등이 기록되었다.

공신의 사후에는 법전에서 정한대로 예장을 시행하였다.[44] 충훈부는 대상자가 생길 때마다 예장의 시행을 허가받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예장의 대상자를 국왕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국왕이 특별히 유념하여 예장을 시행하라고 지시하는 내용, 예조가 예장의 구체적인 방식을 논의한 내용 등이 기록되었다. 또한 천장할 때에도 예장의 시행 여부를 논의한 내용, 천장을 시행할 때 필요한 물품을 내려주거나 부의를 지급하는 내용 등도 함께 기록되었다.

이밖에도 공신이 죽은 뒤에는 妻子의 생계를 보조하기 위한 급록을 내렸다. 1639년(인조 17) 흉년으로 인해 기근이 심해지자 인조는 작고한 공신의 처자식을 조사하여 빈한한 자에게 한시적으로 급록을 하사하라는 전교를 내렸다.[45] 그런데 처음 혜택을 받았던 이들 외에도 玉山君 張曮의 처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생계를 위하여 계속해서 급록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그 인원이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신청 없이도 수급하게 하는 전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46] 따라서 충훈부가 대상자를 조사하여 국왕에게 명단을 보고하는 내용과 호조가 급료를 지급하는 내용 등이 기록되었다.

---

43)『忠勳府謄錄』26, 93면. "本府醫員全兌恊在喪, 代金相龍."

44)『經國大典』禮典 喪葬 禮葬. 王妃父母, 嬪·貴人, 大君·王子君及夫人, 公主·翁主及儀賓, 宗親從二品以上, 文·武官從一品以上及功臣.

45)『仁祖實錄』38권 인조 17년(1639) 5월 13일 기사.

46)『忠勳府謄錄』3, 47면. "今玉山君張曮 (…) 等妻, 相繼呈狀, 願得照例付料. (…) 傳曰, 元勳妻子, 雖不呈訴, 亦令給之."

국가가 공신의 자손을 우대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들을 충의위로 입속시키는 것이었다. 충의위는 1418년(태종 18) 태종이 삼공신의 자손을 우대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수 兵種의 하나로,[47] 공신의 자손들은 충의위에 소속되어 입번의 의무를 지게 되었으며 그 대가로 봉록을 받았다.[48] 그러나 17세기에는 병자호란의 여파로 국가의 재정이 악화되어 더 이상 충의위를 임명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신자손들은 종전과 같이 충의위의 임명을 요구하는 청원을 병조와 충훈부에 잇달아 올리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자 하였다. 따라서 인조부터 효종 때까지를 중심으로 공신자손들이 충의위 구전을 요청하는 내용, 충훈부가 재용 부족이 해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친공신의 적장자손만 입번하게 하겠다고 논의한 내용, 친공신의 衆子孫들이 충의위 입속을 청원하는 내용 등이 기록되었다.

이처럼 충의위의 입속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공신자손에게 내려주는 특전이었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엄격하게 관리하였다. 충훈부는 이미 충의위로 입속된 자들을 대상으로 자격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그 결과 冒屬으로 판명된 자들을 모두 제외시켰다. 다만 모속으로 판명된 자들은 증빙문서가 누락된 경우도 있었고, 증빙문서를 위조한 것이 탄로난 경우도 있었다. 증빙문서가 누락된 경우는 해당 가문에서 재차 증빙문서를 올려 대상자임을 증빙하려고 하였고, 증빙문서를 위조한 경우는 위조죄로 처벌되었다. 따라서 충훈부가 충익위에 입속된 자들을 사정한 사실을 보고하는 내용, 모속자들을 충의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결정하는 내용, 특정 가문에서 증빙문서를 보완하여 재차 충의위 입속을 청원하는 내용, 증빙문서를 위조한 자들을 형조에서 처벌하는 내용 등이 기록되었다.

공신의 적장자손은 3대에 한해서 2품 이상의 품계에 오르면 공신의 뒤를 이어 봉군을 승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이에 따라 해당 가문에서는 대상자가 생기게 되면 충훈부에 청원을 올려 승습봉군의 임명을 요청하였다. 충훈부는 가문의 요청을 확인하고 국왕에게 재가를 받았으며, 해당 사실을

47) 『世宗實錄』 2권 세종 즉위년(1418) 11월 3일 기유.
48) 『忠勳府謄錄』 4, 134면. "開國以來, 功臣子孫嫡長衆子等, 忠義口傳然後, 入番勤仕受祿."

이조로 알려 승습봉군의 임명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따라서 家奴가 승습봉군을 요청하는 내용, 충훈부가 이를 확인하고 국왕에게 보고하는 내용, 국왕의 재가 후에 충훈부가 이조로 해당 사항을 이문하는 내용 등이 기록되었다.

요컨대 공신과 공신자손들은 정해진 규례에 의거하여 국가로부터 다양한 특전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이었고, 충훈부는 이들의 특전을 실현시켜 주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충훈부는 특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의 선별한 후 국왕의 재가를 받았으며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쳤다. 따라서『충훈부등록』에는 특전의 종류와 대상, 특전의 시행 과정, 규정의 변화로 달라진 특전의 내용, 특전의 대상에서 누락된 가문의 청원 등의 내용이 기록되었음을 볼 수 있다.

3) 왕실 의례 관련

세 번째는 왕실 의례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크게 왕실의 묘소 관리와 왕실의 상장례에 관한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왕실의 묘소 관리는 왕실구성원의 묘소수호를 위한 수위관의 임명에 관한 것, 왕실의 상장례는 왕실구성원의 상장례에 필요한 인원의 차출, 상장례 절차 전반에 관한 기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왕실구성원 중에서 세자가 되었으나 왕위에 오르지 못한 順懷世子와 昭顯世子의 경우, 節祀때마다 內官을 파견하였으나 酌酒와 奠爵과 같은 의식은 奴僕으로 거행하게 하였고 각 묘소는 別監으로 守直하게 하였다.[49] 그러나 숙종은 순회묘와 소현묘가 園陵과는 차이가 있지만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작주와 전작의 경우도 내관이 직접 거행하게 하고[50] 묘소에 頃이 있으면 예조의 堂郞이 奉審하고 春秋로는 경기감사가 봉심하게 하였다. 그리고 각 묘소마다 忠義衛를 차출하여 某某守衛官으로 임명하고 묘소를 수직하게 하였다.[51]

이에 따라 1708년부터 충훈부가 충의위를 차출하여 순회묘와 소현묘에

49)『肅宗實錄』46권 숙종 44년(1708) 8월 13일 병진.
50)『承政院日記』444책 숙종 34년(1708) 8월 25일 무진.
51)『承政院日記』444책 숙종 34년(1707) 8월 21일 갑자.

수위관을 파견하게 되었다.[52] 또한 이러한 규례가 확대・적용되면서 姜嬪의 묘소인 愍懷墓, 孝章世子의 묘소인 孝章墓, 懿昭世孫의 묘소인 懿昭墓, 思悼世子의 묘소인 垂恩墓, 文孝世子의 묘소인 孝昌墓 등 세자, 세자빈, 세손의 묘소마다 수위관을 두게 되었다. 이 때문에 충의위가 각 묘소의 수위관으로 임명, 교체되거나 휴가를 받는 내용이 주기적으로 기록되었다.

또한 懿敬世子의 상장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세자의 魂宮에서 尙食獻祭가 있을 때마다 매일 종친 및 공신자손 1인을 번갈아 直宿하게 하였으며, 입번하는 종친 및 공신자손은 전설사와 충훈부에서 각각 차출하게 하였다.[53] 이러한 규례는 조선후기까지도 이어져서 소현세자의 상식헌제 때에도 종친 및 공신자손이 번갈아 直守하게 하였다.[54] 이에 따라 충훈부는 소현세자를 비롯하여 효장세자와 현빈, 문효세자의 상장례가 있을 때마다 상석헌제를 위한 殯宮進止를 충의위에서 차출하였다. 이 때문에 세자와 세자빈, 세손 등의 장례에 빈궁진지충의위의 차출 및 의망, 녹봉의 지급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었다.

왕실의 상장례에서 충의위는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1718년(숙종 44) 端懿嬪의 상장례를 보면 초우제 및 재우제부터 졸곡 때까지의 香祝, 賜謚, 發引, 返虞 때의 각 差備, 발인 때의 銘旌捧持, 翣扇捧持를 모두 충의위에서 차출하였다.[55] 그리고 이후의 1751년(영조 27) 현빈, 1752년(영조 28) 의소세손, 1762년(영조 38) 수은세자, 1779년(정조 3) 원빈 홍씨, 1786년(정조 10) 문효세자를 비롯하여 1800년(정조 24) 정조, 1805년(순조 10) 정순왕후의 상장례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충훈부가 왕실의 상장례가 있을 때마다 병조, 빈궁도감, 예장도감 등과 충의위의 차출을 논의하였던 내용이 기록되었다.

---

52) 『忠勳府謄錄』 7, 73면. "宗室及功臣忠義中二員, 稱以某墓守衛官, 吏曹出差帖, 輪番守直."

53) 『世祖實錄』 10권 세조 3년(1457) 11월 18일 무인.

54) 『忠勳府謄錄』 4, 80면. "乙酉[1645]五月初二日, 捧承傳, 禮曹啓曰, 取考實錄, 則王世子尙食獻祭時, 宗親及功臣子孫一人, 輪次直守."

55) 『忠勳府謄錄』 8, 98-104면. "戊辰[1718]二月初十日 (…) 殯宮進止忠義衛一員, (…) 殯宮都監甘結內, 初虞祭香祝乙良, (…) 自再虞至卒哭祭香祝乙良, 依前例, 亦以魂宮忠義衛奉進事, (…) 殯宮喪賜謚, 及殯宮發引返虞時, 各差備忠義衛, (…) 銘旌奉持忠義衛, (…) 翣扇奉持忠義衛, 實預差成冊移送."

그런데 1834년(순조 34) 순조의 상장례 때부터는 충의위의 차출과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 상장례의 전반적인 절차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즉 殯殿·魂殿·山陵에 필요한 進止, 銘旌差備 등을 충의위에서 차출하는 내용 이외에도, 국왕의 승하, 빈전 및 혼전의 지정, 수렴청정의 시행, 소렴·대렴·발인 등의 구체적인 상장례 일정, 왕세손·왕비·왕세자빈·내명부의 服制와 복식, 謚號·廟號·殿號·陵號의 의망 등을 기록하였다.[56] 이러한 경향은 1843년(헌종 9) 효현왕후, 1849년(헌종 16) 헌종, 1863년(철종 14) 철종의 상장례를 기록할 때에도 지속되었다. 따라서 순조의 상장례를 기점으로 충훈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왕실의 상장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세하게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충훈부는 왕실구성원의 묘소수호와 상장례 의례에 필요한 인원을 충의위에서 차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었다. 또한 19세기 전반에는 왕실의 상장례를 더욱 중요하게 다루게 되면서 충훈부의 업무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상장례의 제반 절차와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충훈부의 운영 관련

네 번째는 충훈부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였는데, 이 역시 조직구성의 변화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마련에 관한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직구성의 변화는 충훈부에 소속된 구성원의 교체 및 휴가에 관한 내용, 충익부의 합속에 관한 내용 등이 있다.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마련은 충훈부 소유 재산의 관리, 수세방식에 관한 내용 등이 있다.

충훈부의 구성원은 공신과 공신자손 중에서 적합한 자를 선발·등용하였기 때문에[57] 여타의 관원을 충원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충훈부의 관원은 有司堂上, 都事, 書寫官 등으로 구성되었다. 유사당상은 친공신 중에서 3명

56)『忠勳府謄錄』30, 1-38면. "傳曰大寶傳于王世孫. 大行大王昇遐于慶熙宮會祥殿. (…) 一. 陪從白冠, 自持飯事."
57) 김명화, 앞의 글, 12-15면.

을 擬望하여 1명을 落點하는 형태로 충원하였으나 만약 친공신이 없는 경우에는 승습봉군을 차출하였다.[58] 이와 달리 도사와 假郎廳으로도 불리는 서사관은 單望으로 교체되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春夏等과 秋冬等으로 나누어 1년에 두 차례의 褒貶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포폄을 실시한 내용, 유사당상 및 도사의 질병으로 인해 포폄의 일정을 조정한 내용이 기록되었다. 그리고 각 관원이 파직, 사망, 질병 등의 이유로 교체되거나 墳山 수호, 歸覲, 질병 등의 이유로 휴가를 신청한 사항들도 그때마다 기록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충훈부 조직 구성의 가장 큰 변화는 충익부가 충훈부로 합속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합설에 관한 찬반 논의, 조직 구성의 재정비, 충익위의 운영과 번포의 수세 방안에 관한 논의 등이 기록되었다. 그리고 충익부의 복설과 관련하여 대신들의 찬반 논의, 충익부의 조직 구성, 관사의 신축, 운영비 마련 방안, 구성원의 배치 등과 같이 합속되기 이전의 내용도 아울러 기록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충훈부는 各司自辦의 원칙에 의거하여 전국 각지의 노비와 전답 등을 소유하고 이를 토대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소유 재산의 관리, 수세 방식 등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었다. 소유 재산 중에서 노비의 경우는 외방 노비에 대한 소유권 분쟁, 各司와 各衙門이 충훈부 노비를 침탈한 사실 조사와 방안 마련 등이 기록되었다. 전답의 경우는 백성들이 冒占耕食하는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假郎廳의 파견, 屯田畓을 加占한 것에 대한 시정 조치, 백성들의 청원으로 인한 전답 수세량의 조정, 전답의 소유권 분쟁 등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었다. 이외에도 苔田, 蘆田, 堰畓, 漁場, 鹽盆의 수세를 위한 差人의 파견, 궁방과의 수세처 혼동으로 인한 분쟁, 大同船의 치폐로 인한 補縮分 마련, 浮費의 절검에 관한 내용 등이 기록되었다.

요컨대 충훈부는 공신과 공신자손들로 관원을 구성하였으며 전국 각처에 소재한 노비와 전답 등을 통해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각종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58) 『大典通編』 忠勳府. "[增] 堂上三員, 啓差有司, 無親功臣, 則以承襲君差出."

4. 맺음말

이상에서 공신의 우대와 관련된 여러 업무를 담당했던 충훈부가 편찬한『충훈부등록』을 대상으로 구성 및 체제, 주요 내용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는『충훈부등록』의 자료적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이루어질 공신 관련 연구에 기초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충훈부등록』은 충훈부가 업무상의 필요로 인해 작성하였던 내부 자료로, 충훈부가 성립되었던 조선 초기부터 갑오개혁 이전까지 계속해서 편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중에서 17-19세기에 작성되었던 책들만 현재까지 전해져 왔으며 표제 및 권수제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존본을 대상으로 해당 규모를 파악하면, 1609년(광해 1)부터 1890년(고종 27)까지 중에서 229년간의 내용이 수록되었으며 39책 6,578면의 분량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충훈부등록』의 구성은 대체로 일반적인 등록의 편차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연월일 순서로 편차되었다. 다만 결본으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군데군데 기록이 빠진 시기가 존재하고, 또한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이 특정 연도가 여러 책 속에 분산되어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특정 연도를 겹쳐서 기록한 것은 충익부가 충훈부로 이속되기 이전의 기록을 정리한 것, 경상지역의 충익위의 모속과 분간에 관한 내용만 정리한 것, 전라지역의 적몰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것 등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즉『충훈부등록』을 편차할 때 원칙적으로는 연월일을 토대로 정리하였으나 부분적으로는 특정 주제 또는 사건에 관한 기록을 모아 정리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충훈부등록』은 3세기 동안 충훈부가 소관했던 업무의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었기 때문에 이와 연관지어 대략 4가지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첫 번째는 공신과 공신 자손의 자격 유지 및 변동에 관한 것으로 공신의 녹훈과 삭훈, 공신자손의 관리로 나눌 수 있다. 공신의 녹훈과 삭훈은 회맹제의 개최에 관련된 내용, 공신의 추록 여부, 역모자의 삭훈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 공

신자손의 관리는 공신자손이 가계계승을 통해서 공신의 지위를 승계받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두 번째는 공신과 공신자손의 우대에 관한 것으로 공신에 대한 우대는 봉군 및 추증, 생계유지를 위한 급료 지급, 질병 치료를 위한 약재 보급 및 내의원 파견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에 비해 공신자손에 관한 것은 충의위 입속과 모속에 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실려있다.

세 번째는 왕실 의례에 관련된 것으로 주로 왕실의 묘소 관리와 왕실의 상장례에 관한 내용으로 구분하였다. 왕실의 묘소 관리는 세자, 세자빈, 세손 등의 묘소에 충의위를 수위관으로 차출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다. 왕실의 상장례에 관한 것은 국왕, 세자, 세손, 비빈 등의 상장례에 필요한 인원을 충의위에서 차출하도록 한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따라서 왕실 의례는 충의위의 차출 및 역할에 관한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네 번째는 충훈부의 운영에 관한 사안들로 인적 구성의 변화와 운영비 재원의 마련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인적 구성의 변화는 충훈부의 구성원이 교체 및 충원, 휴가를 받는 내용과 관련되며, 재원의 마련은 소유 재산의 관리 및 수세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참고문헌

『大典通編』,『承政院日記』,『日省錄』,『朝鮮王朝實錄』,『忠勳府謄錄』.

고민정,「조선전기 충훈부의 성립과 역할」,『진단학보』제133호, 진단학회, 2019, 77-101면.
_____,「『繼後謄錄』의 기술방식과 法外繼後에 대한 재검토」,『사학연구』제113호, 한국사학회, 2014, 199-236면.
김명화,「朝鮮後期 忠勳府 文書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9.
김성수,「16·17세기 中央衣料機構의 運營實態」,『서울학연구』제20호,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2003, 65-100면.
김학수,「18세기 한 鄕班 출신 功臣의 정치·사회적 존재 양상—영조대 奮武功臣 朴東亨(1695-1739)을 중심으로—」,『朝鮮時代史學報』제77호, 조선시대사학회, 2016, 173-230면.
김 혁,「朝鮮後期 中央官廳 記錄物에서 謄錄의 위상」,『서지학보』제26호, 한국서지학회, 2002. 93-112면.
신명호,『조선의 공신』, 가람기획, 2003.
연갑수,「朝鮮後期 謄錄에 대한 연구」,『역사문화연구』제12집,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2000, 189-205면.
오갑균,「奮武功臣에 대한 分析的 硏究」,『淸州敎育大學 論文集』제21집, 청주교육대, 1984, 297-320면.
_____,「奮武功臣으로 인한 身分變動」,『邊太燮博士 華甲紀念 史學論叢』, 삼영사, 1985, 743-766면.
이상식,「숙종대 保社功臣의 錄勳 과정과 사회적 關係網 분석」『한국사연구』제155호, 한국사연구회, 2011, 75-112면.
장서각 편,『조선의 공신』,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전경목·박용만,「〈二十功臣會盟軸〉의 특징과 가치」,『장서각』제22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5-22면.
조영준,「조선후기 宮房의 謄錄 작성과 고문서의 謄書 실태」,『고문서연구』제44집, 한국고문서학회, 2014, 143-171면.
진나영,「『寧國原從功臣錄券』의 書誌的 硏究」,『서지학연구』제73집, 한국서지학회, 2018, 5-34면.
진나영·송일기,「『保社原從功臣改修錄券』의 書誌的 硏究」,『서지학연구』제60집, 한국서지학회, 2014, 313-346면.
최승희,「朝鮮後期 原從功臣錄勳과 身分制 動搖」,『한국문화』제22호,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8, 113-158면.

【Abstract】

Review of the data of *the Registration of the Office of Merit Subjects* (忠勳府謄錄) in the late Joseon Dynasty

Ko, Min-Jung*

This study tried to help next studies related to meritorious retainers by review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data of *the Registration of the Office of Merit Subjects* written by the Office of Merit Subjects.

The Registration of the Office of Merit Subjects is the records of 229 years from 17th to 19th centuries and 39 books and 6,568 pages remained now. The books are usually composed in order of Year, Month, and Days. However, if there are particular issues, the books are edited by collecting them by applicable subject. The transfer of the Office of the Original Meritorious Retainers and disputes of property possessed by the Office of Merit Subjects are those examples.

The contents of *the Registration of the Office of Merit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4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First, it's about meritorious retainers and their descendants'qualification. Second, it's about meritorious retainers and their preferential treatment. Third, it's about royal protocols. And fourth, it's about operation of the Office of Merit Subjects. However, in addition, because the various contents related to meritorious retainers were recorded, reference of this book is necessary to study meritorious retainers in the later Joseon Dynasty.

Keywords: *the Registration of the Office of Merit Subjects*, Chunghunbu (the Office of Merit Subjects), meritorious subjects, Descendants of meritorious subjects, privilege.

접수일: 2019.12.30. ‖ 심사일: 2020.01.13. ‖ 게재확정일: 2020.02.17.

* Research Professor, The Taedong Institute for Eastern Classics, Hallym Univ.